

「조선표류일기」(1819)에 나타난 일본표류인 호송과 접대 실태' 토론문

이케우치 사토시

(1) 오늘의 연구발표는 조선 표착 일본인에 대한 접대에 관해, 야스다 요시카타의 『朝鮮漂流日記』를 소재로 하여, 그 규정 및 실태를 비교 대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1-1) 발표자가 '규정'이라고 한 것은 규정인가? 아니면 관행인가? 우선 이 점에 대해 질문하고 싶다.

『増正交隣志』에 보이는 지급내용 (본 발표문 표1)도 『増正交隣志』의 해당 부분을 보는 한 전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언제의 일인지 알 수 없으며, 조정으로부터의 지시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다. 해당 기사 말미에 1797년의 사례가 기록되어 있지만, 말도 서로 통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일본인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발표자가 인용한 정성일「전라도와 일본」(경인문화사, 2013)의 '표 5-3 조선에 표착한 대마도 사람에게 대한 接應 기준 (1713년)'은 쓰시마번정사료「御米漕船其外渡海之船朝鮮地へ脇乗之節、彼國より馳走の定格 正徳三年」가 그 전거이며, 이는 대마도에서 부산을 향해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배가 '脇乘', 즉 공식적인 항로를 벗어나 부산 이외의 장소에 도착했을 때의 규정이다. 다시 말해 '표류 일반'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 또한 '표5-4 조선에 표착한 일본인에게 지급된 음식 (1782 년)'은 쓰시마번정사료「公儀被仰上」<sup>21</sup>(게이오대학 소장)이 그 전거가 되고 있다. 이것은 실제 지급금액 (즉 실태)을 기록한 것으로, 규정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이 사료를 통해 알 수 없다.

즉, 오늘 발표 내용을 보는 한, 규정이 어떠한 규정이었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그 규정이라는 것이 무엇을 계기로, 언제, 누가 만들어진 것인지, 또한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떻게 변화했는지, 혹은 변화하지 않았는지 등등.

(1-2) 가령 규정과 실태가 괴리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예를 들어 지급기준에 신분 차이가 있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바이다. 신분제 사회에서는 당연한 일이며 현대사회에서도 유사한 사례는 산재해 있다. 야스다가 무사 신분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도 일기를 읽어보면 알 수 있다. 규정과 실태를 비교 대조한 결과 대체 어떠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고 할 수 있는가? 즉,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 말이다.

(1-3) 야스다 일행의 표착지에서 부산에 이르는 송환경로는 규정대로였다고 한다(p.2). 이 경우 규정이 지켜진 것이다. 규정이 지켜지거나 지켜지지 않거나 했던 것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2) 본 발표에서는 야스다 요시카타의 『朝鮮漂流日記』를 소재로 하여 일본인 표류민의 실태를 추구했다. 여기에서 밝혀진 몇몇 실태에 대해 조금 묻고 싶다.

(2-1) 문정관 조명오(趙明五)와 야스다 일행 사이에 송환 방법을 둘러싼 논의가 있었다. 일본 선박을 수리하고 송환하거나 조선 선박으로 송환하는 것에 대해 양측이 선례를 제시하면서 논의했지만, 결국 야스다 일행이 제시한 선례가 우선되었다 (p.3). 왜 그렇게 되었는가?

(2-2) 조선 선박을 이용하여 송환하기로 결정된 후에 조명오가 송환 비용을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한다(p.3). 이는 조명오가 제도를 오해했기 때문이라고 본 토론자(이케우치)는 서술한 적이 있다. 발표자는 조명오가 호송 비용이 조선 측의 부담이 될까 생각하여 그렇게 요구했다고 추측한다(p.5). 이 주장은 과연 성립되는 것인가? 송환비용을 요구하는 조명오의 필담 글을 본 조선 관리들은 이를 비판하고, 야스다에게 용서를 구했다.

(2-3) 야스다 일행이 표착지와 체류지에서는 표1의 규정에 미치지 못하는 지급밖에 얻지 못했다고 한다(p.6). 이것은 야스다 일행의 기본적인 식량이 자신들의 배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야스다 일행이 규정 외의 음식을 요구한 것은, 채소, 생선, 닭고기 (표 3) 등 신선식품 뿐이다.

(2-4) 실태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말해보자면, 1692년 표착 사건에 관해서는 첫 취조 후에 열린 연회의 메뉴가 구라치 가쓰나오(倉地克直)의 『近世日本人は朝鮮をどうみていたか (근세 일본은 조선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가)』(角川選書, 2001, p.174-175)에 실려 있으며, 송별연의 메뉴도 176쪽에 나와 있다. 또한 1726년의 송별연에 관해서도 같은 책 183쪽에 실려 있다. 1756년의 표류에 관해서도 「津輕船朝鮮江陵漂着記」(『江戸漂流記總集』 1 (日本評論社, 1992) p.277)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들은 상인 신분의 표류 사례이며, 야스다의 사례와 비교할 수 있는 소재이다. 한일관계사인 이상, 분석대상이 일본과 한국 양쪽에 걸쳐 있으므로, 관련 사료와 선행연구는 한국과 일본 양쪽에 존재한다. 양쪽의 사료와 선행연구를 같이 참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3) 기타 질문. 표류순부제도(漂流順付制度) 도입에 대한 이해 (p.4)는 잘못이 아닌가. 이는 쓰시마번과 조선정부 사이의 세견선(歲遣船) 파견비용절감 정책의 일환이지, 일본과 조선 사이의 표류민 송환 비용에 불균형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